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나19552 토지인도 등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대표자 목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표자 목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 20. 선고 2010가합11743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27.

판 결 선 고 2012. 8. 29.

주 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중 제1의 나.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나. 126,813,400원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0. 12. 16.부터 위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9,058,1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억 4,500만 원 및 그 중 4,5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9. 8.부터,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2010. 9. 10.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불공정행위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사용이익 반환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 제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하는 판단

가.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당심에서 아래의 논거를 들어 이 사건 명도약정은 피고의 사기 또는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가) 원고가 이 사건 명도약정을 체결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① 첫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기 위함인데, 이를 위해서는 피고로부터 유치권포기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였다. ② 둘째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유치권포기서 제출의무'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의무'는 피고가 유치권자의 자격에서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명도약정은 피고가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나) 이 사건 명도약정서에 피고가 '유치권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치권을 신고한 자'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 내용상의 의미까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는 당시 피고가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명도약정이 체결되기는 하였지만, 원고가 피고를 유치권자라고 명백히 인식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가 '유치권자'라는 단정적 표현을 피한 결과일 뿐이다.

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의 기재 여부는 이 사건 명도약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명도약정 체결 이전에 □□□, ■■■, △△△로부터 확인한 사실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는 것인데, 법적 지식이 없는 원고로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피고의 주장에 사실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 유치권배제신고를 한 사실은 알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었다.

마)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을 때 3억 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나머지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이 사건 대금지급시기를 유치권 포기시기와 일치시킨 것으로, 이 사건 명도약정이 피고가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한 것임을 뒷받침한다.

바) 이 사건 명도약정에서 정한 피고의 보전 의무, 즉 공사업자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할 의무는 피고가 유치권자로서 유치권을 포기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의 일부에 속하거나 그 의무의 예시에 불과하지,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라 피고가 새로 부담하는 의무라고 볼 수 없다.

사) 이 사건 명도약정에서 정한 약정금 7억 원은 이 사건 경락대금의 1/2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허위의 유치권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이라고 볼 수 없다.

아)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집행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은 불특정 경락인에 대한 사기에 해당한다. 설령 위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협상을 하기 위하여 피고를 만났을 때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이

유치권자라고 주장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명도약정의 성격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도약정은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낙찰받으려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유치권 배제신고가 되어 있는 피고 사이에 낙찰 이후 예상되는 분쟁과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그 분쟁을 사전에 종지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체결된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인정된다.

민법 제731조가 규정하는 화해계약에 '장래 발생할 분쟁을 예방할 경우', '권리의 존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또는 '당사자들의 불안정을 배제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느 경우이나 이러한 계약에 대하여도 착오에 관한 민법 제733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명도약정에도 착오에 의한 취소의 제한을 규정한 민법 제733조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화해계약의 경우에는 민법 제733조에서 정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에 관한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도 민법 제110조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15278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명도약정이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원고와의 협상과정에서 유치권자라고 주장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유치권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점이 이 사건 명도약정 당사자들에게 명백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종교용지에 해당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자 □□□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피고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다만 □□□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2007. 9. 12. □□□ 앞으로 명의신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등기는 무효이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에도 그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는 이를 대항하지 못하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수인 등이 생기기 전에 제3자 이의의 소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를 저지하는 것이 원칙적인 권리구제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건축허가와 소유권보존등기가 □□□ 앞으로 되어 있고, 공사업자들에 대한 도급계약의 명의도 □□□로 되어 있어 위 절차에서 피고의 소유권을 증명하거나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었다. 피고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소유자로 취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의 최종 부담자로서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자재대금 등을 지

출한 점,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이로울 뿐 아니라 다수의 법적 분쟁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채권자 역시 피고의 채권자가 아니라 □□□의 채권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대신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부담한 자로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피고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지위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즉 피고는 유치권 신고서에서 "피고는 □□□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공법상 3년 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의 동의하에 □□□를 도급인으로 △△△과 14억 5,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히면서, 8억 7,600만 원(공사대금 중 8억 5,000만 원 + 공사자재대금 2,600만 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신고하였는데, 그와 같은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증거는 없다.

③ 원고 역시 피고가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근거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착오에 빠진 적이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이므로 유치권을 가지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라는 사실은 피고가 처음부터 밝혔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명도 약정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명도 약정 당시 이를 알고 있었다. 원고는 "△△△이 피고를 상대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통하여 경매를 방해하였다며 고소한 사건에서 경찰이 피고를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는 피고의 해명 때문에 피고가 유치권자라는 착오에 빠졌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해명한 위 사실이 허

위는 아니므로 위 해명 자체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원고가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자인지 여부'는 화해의 목적이 된 직접적인 '분쟁의 대상'이지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이 아니므로, 착오에 의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있어서 신고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는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매수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동산경매로 인한 분쟁의 다수를 차지한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인수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공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왔다. 전자는 경매과정에서 매수인의 착오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미

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집행법원이나 감정인이 유치권의 성부 및 피담보채권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공제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 실무는 후자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오면서 다만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통하여 유치권의 성부 및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가 이를 주의깊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신고된 유치권 및 피담보채권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는 매수인과 인수인 사이에 당연히 예정된 분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매수인 역시 매수가 신고(입찰)를 함에 있어 유치권의 성부 및 그 피담보채권액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그 결과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하자가 없는 이상 유치권이 인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입찰하였던 매수인이라도 차후 유치권이 인수됨을 이유로 매각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의나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명도약정서에 피고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 및 실제 점유자" 또는 "실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 운영자"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원·피고가 '피고를 유치권자로서 확정하지 못하는 법적 상태'를 반영한 표현으로, 이 사건 명도약정에 있어서 피고가 유치권자인지 여부가 다툼 없이 양해된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

③ 이 사건 건물 명도의 대가로 약정한 7억 원 역시 이 사건 유치권의 성부가 협상의 대상이었음을 보여 준다. 이 사건 명도약정 과정에서 피고는 최초 원고에게 유치권 신고된 금액(8억 7,600만 원) 보다 많은 11억 원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원·피고는 여러 차례 협상을 거쳐 최종적으로 유치권 신고된 금액보다 적은 7억 원에 합의를 하였다. 이는 원·피고 모두 피고가 신고한 유치권이 성

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이다.

④ 또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 당시 감정가격은 2,304,571,580원이었는바, 원고의 매수가격이 14억 7,515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명도 약정에서 정한 7억 원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게 크게 불리할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명도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명도약정에 포함된 '공사업자에 관한 건, □□□에 관한 건' 등의 내용 역시 유치권자로서의 명도의무나 이에 수반되는 의무의 예시가 아니라 유치권 협상 과정에서 피고가 7억 원을 받는 대가로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의무로 해석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명도약정은 아래와 같이 원고의 궁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명도약정 당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경매대금을 납부하여야 하였으므로, 피고와의 타협에 의하여 유치권포기서를 받는 것이 급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빨리 인도받아야 원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함으로써 높은 이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

나) 원고는 종교단체이고, 원고의 대표자는 사회 경험이 없는 목사이므로 무경험의 요건도 충족된다.

다)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7억 원의 지급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① 유치권포기각서 제출 의무, ② 이 사건 각 부동산 인도의무, ③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보존의무'에 비하여 너무나 과중하므로, 이 사건 명도약정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2) 판단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57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정(특히 이 사건 명도 약정이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명도약정 당시 궁박한 상태 또는 무경험이었다거나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른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명도약정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

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실질적 매매계약이다.

나)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르면, 7억 원의 지급의무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3억 원의 지급의무는 원고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억 원의 지급의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다) 피고는 계약금 3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위 계약금 3억 원을 수령한 이후에는 이 사건 명도약정에서 정한 2010. 12. 15.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 또한 4억 원의 금원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라)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명도약정에 따른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의 사용이익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명도약정이 경매절차를 이용한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도 약정은 원·피고 사이의 화해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이라고 인정된다.

다음으로 이 사건 명도약정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7억 원 중 3억 원은 피고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나머지 4억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유치권포기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2억 4,500만 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3억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무기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가. 개요

앞서 본 판단에 일부 배치되는 제1심판결 이유의 판시 부분과 당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수정된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나. 내용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2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점유·사용

피고는 2012. 2. 1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사용을 중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받을 것을 통고하였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1행의 [인정근거]란의 "을 제5호증" 다음에 "을 제19, 20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제7쪽 제13행부터 같은 쪽 제19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20행의 "2)"를 "1)"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9쪽 제10행부터 같은 쪽 제16행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쪽 제17행의 "4)"를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12쪽 제3행의 "점유·사용하고"를 "점유하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13쪽 제1행부터 같은 쪽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2012. 2. 15.까지 예배장소로 점유·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위와 같이 사용을 종료한 날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차임이 월 9,058,1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12. 16.부터 피고가 그 사용을 종료한 2012. 2. 15.까지의 차임으로 126,813,400원(= 월 9,058,100원 × 1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사용이익 반환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만

 판사 서승렬

 판사 문주형

목 록

1. 고양시 일산동구 xx xxxx-2 종교용지 471.5m²
2. 고양시 일산동구 xx xxxx-2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하
2층 지상5층 종교시설(교회)
지2층 71.07m²
지1층 373.73m²
1층 37.85m²
2층 276.90m²
3층 276.90m²
4층 276.90m²
5층 127.48m². 끝.